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3093
----------	------

2022. 2.1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I.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II.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3093	2022.1.21.	2022.1.25.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2.2.10.)	원안동의

III. 제안설명 요지(최진석 도시계획국장)

1. 제안 이유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흙길)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삼양로181길)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리조트,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2. 주요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우이령공원	문화공원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	증)6,180	6,180	-	

3. 추진경위

- '18.12~'20.07 :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 (강북구)
- '20.12.30.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추진계획 수립
- '21.04.29. ~ 05.13.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21.06.10. : 강북구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 '21.07.19. :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동의)
- '21.09.0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조건부추진)
- '21.09.10.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 '21.11.03. :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분석 (적정)

4. 주민 의견청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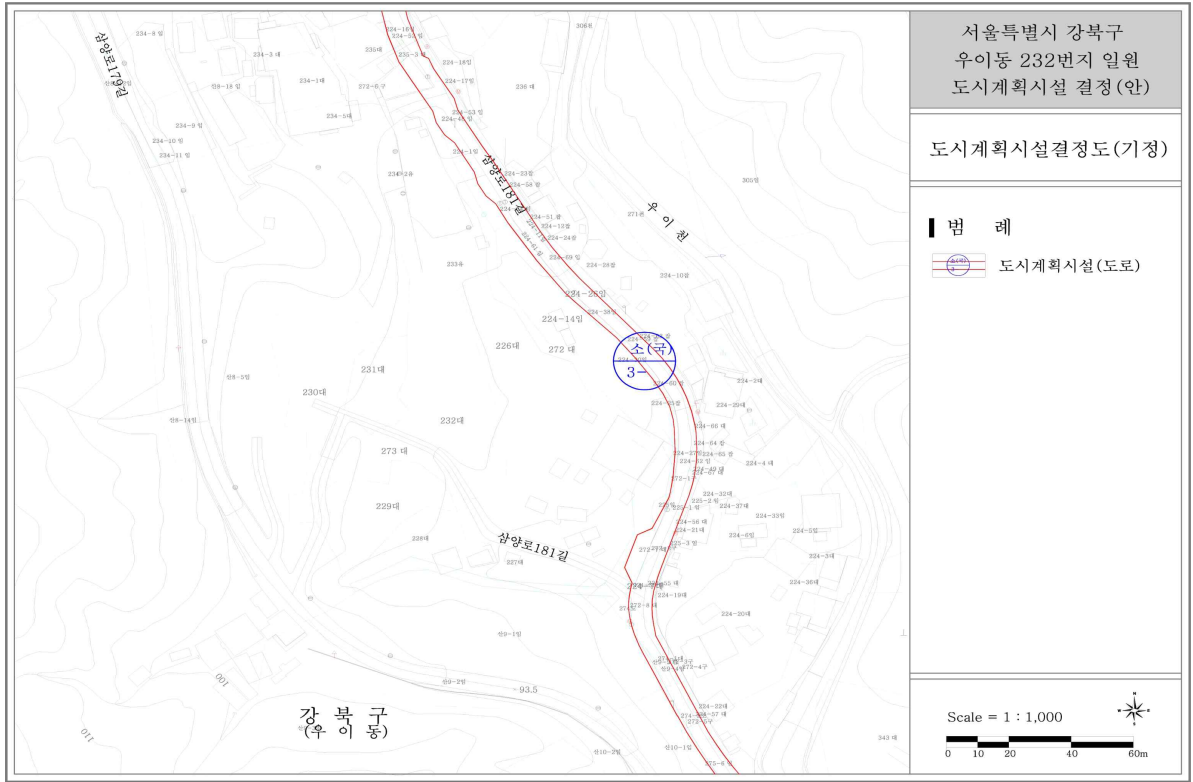
- 열람기간 : 2021. 4. 29. ~ 2021. 5. 13.(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서울시보, 및 일간신문(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 소유자	•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곳으로 이미 공원에서 지정된 곳도 해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함	•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하여 취득할 계획임	미반영
	• 문화공원은 성격상 지역의 대표적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문화공원 특성에 맞지 않음	• 우이동 역사·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임	
	•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는 곳은 개인토지 위주의 비정형적인 상황으로 문화공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 결정에 반대함	•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서울연구원)을 통하여 접근성, 이용 편의성,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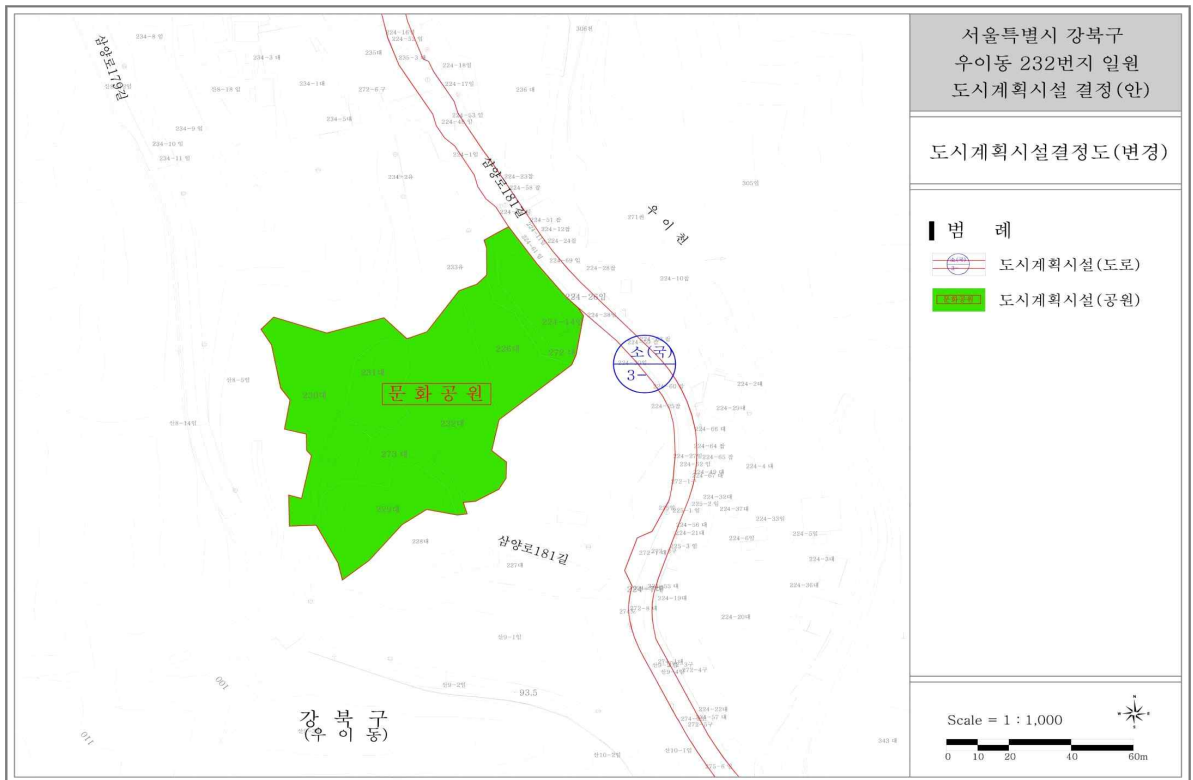
- 관련부서 협의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 사업재원 조달계획 명시	•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위치로서 공원이 기설정된 지역에 도시 계획시설(문화공원)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흙길)과 우이령 숲 속문화마을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에게 다 양한 문화체험·휴식공간 제공	반영
	• 대상지 남측에 설치된 캠핑장(문화공원)이 접해 있는 바, 중복된 문화공원의 조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	• 대상지 남측 ‘우이동 가족캠핑장(문화공원)’ 은 캠핑객으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방 문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 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신규 공원(문화공원) 지정 추진	반영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과	•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 도시계획 시설(공원)은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전협의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사업 시행	•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 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 득함 (’21.09.06.)	반영
서울시 공원조성과	• 대상지는 區관리 공원이며, 市는 신규 공원 결정을 위한 지원은 어려우므로 국비 분담비 율에 맞춰 자치구 자체 재원 마련 계획 필요	•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16조 및 제16조 의2에 따라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문화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市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이행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市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계획	반영
서울시 시설계획과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 등 제시 바람	• 2020년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 (서울연구원)결과 및 수유지역생활권계획 에 반영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국립 공원으로 낙후되어 가는 우이령 숲속문화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반영
	• 개발제한구역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선행 필요	•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市공원녹지정책과) 와 사전협의완료 • 市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개발제한 구역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국토부(녹색 도시과)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를 득함(’21.09.06.)	반영
	• 공원형상 및 경계의 적정성 여부를 제시 바람	• 서측(230번지)은 국립공원 경계로 설정 하고, 동측(224-14번지)은 도시계획시 설(도로) 경계에 따라 설정 • 북측(231, 232번지)은 지적경계로 설정 하고 남측(226번지)은 지장물(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반영
	•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 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임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음 (’21.09.10.)	반영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변경)



IV.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개 요”

- 이 의견청취안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연접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구)우이동떡거리마을, 삼양로181길) 문화공원을(6,180 m^2) 신설하려는 것으로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배 경”

-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은(이하, 우이령마을)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 우이동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로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국립공원의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11.1.검토보고서 붙임1) 가운데¹⁾, 시설노후화·자연훼손·경관악화·방문객감소 등 마을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북한산우이역이(우이경전철) 개통되어('17.9.)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리조트(파라스파라리조트, '21.8.개장)²⁾·가족캠핑장('21.3.

1) 국립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중복 지정되고 국립공원에서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11.1.) '20년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어('20.6.) 현재는 용도지역·용도지구로만 관리되고 있음(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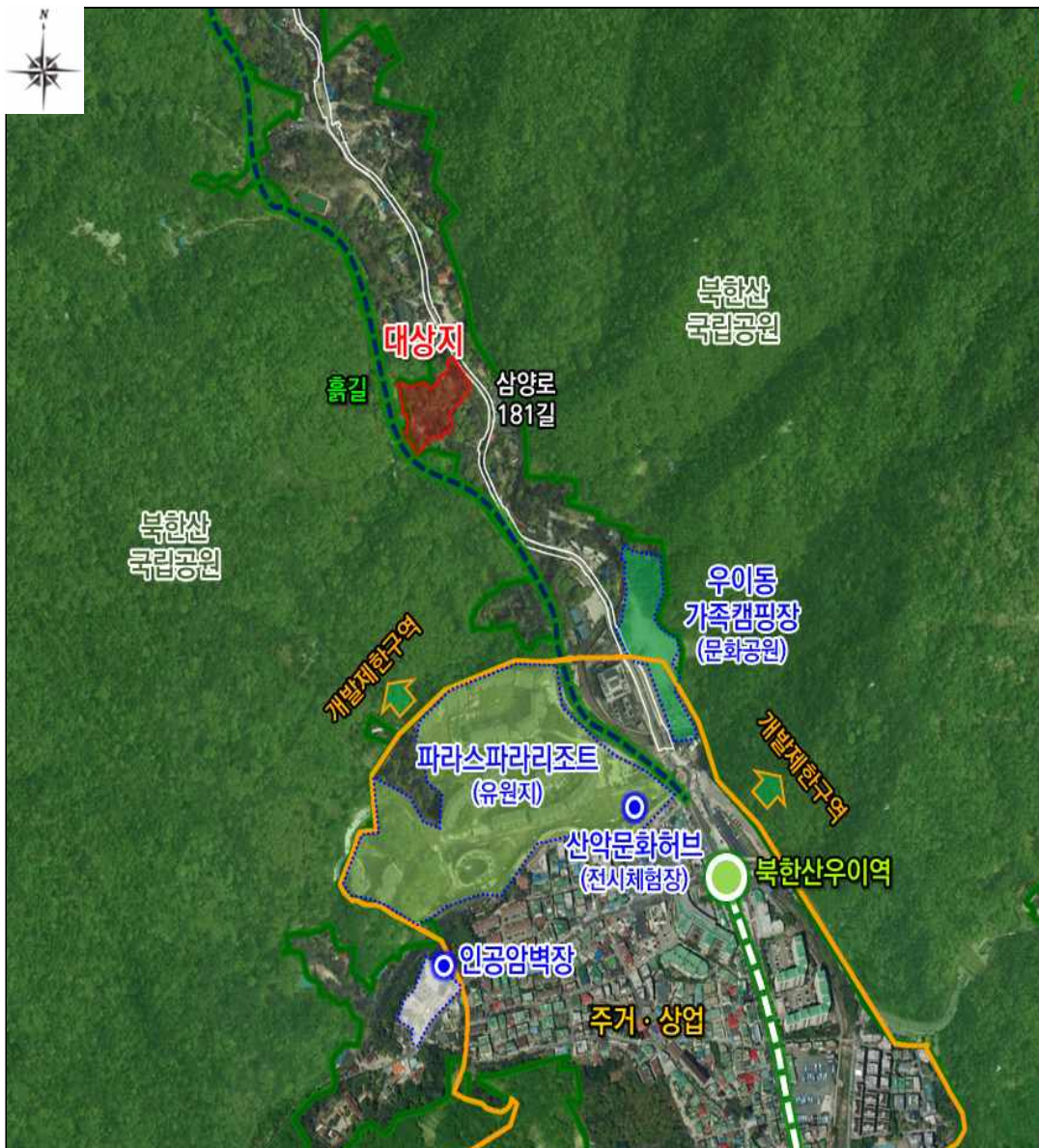
※ 국립공원 해제시 밀집마을지구도(일정 수준 건축행위 인정, 검토보고서 붙임3) 해제되어,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위 제한을 직접 적용받게 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구 민원 발생

2) 난개발 및 인허가과정 상의 문제와 의혹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11.4.~'11.12.) 서울시 감사가('11.12.~'12.6.) 수행되고 '12년 사업시행사(더 파인트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구)북한산콘도사업이, 사업정상화 과정을 거쳐 '21년 파라스파라리조트(삼정기업)로 개장함

※사업 정상화 주요 내용은, 문제가 되었던 경관 및 공공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일부 건물 높이를 하향하고(2개동 7층→5층) 객실 30%는 분양이나 회원모집 없이 시민 누구나 이용토록 하며, 공개공지·산책로·북카페 등을 조성·개방하고, 공공기여시설로 산악박물관

개장·인공암벽장(‘22.4. 개장 예정) 등 새로운 집객시설들이 조성되어 (검토보고서 붙임2) 마을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됨에 따라,

마을 중심부에 북한산국립공원과(흙길) 마을 도로를(삼양로 181길) 면적으로 연결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접근 및 교차 동선을 개선하고, 휴식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증가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을 비롯해 공영주차장·컨퍼런스홀을 조성하며,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통해 지역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됨

“현 황”

- 우이령마을은 남측 북한산우이역에서 북측 전경대까지 계곡을 따라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18년 기준 98세대가 거주 또는 영업 중이며(영업장 41 개소),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삼양로181길, 차량통행 가능) 마을 서측의 국립공원 흠길이(삼양로 179길, 등산로·산책로) 위치하고 있음.

※ 마을 현황 (자료: 시설계획과)

- 인구현황(백운천 북측 기준) : 171명, 98세대('18년 기준)
- 규 모 : 1,206,568 m^2 (북한산우이역 ~ 서울지방경찰청 802의무경찰대)
- 도시계획현황 : 개발제한구역 87.1%, 자연녹지지역 87.1% 등
- 주요시설 : 유원지(리조트 전시체험관), 문화공원(캠핑장), 소로3류(삼양로181길) 등
- 이용객현황 : 기존 주이용객은 등산객과 모임을 위한 단체방문객임
- 계절성, 체류시간이 짧고 주말 및 특정 계절(봄·가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양 도로는 마을 입구에서 분기하여 마을을 지날 때까지 접속하지 않아³⁾, 흙길 이용객은 마을 내 음식점 등에 접근하기 어렵고, 마을 도로(삼양로 181길) 이용객은 마을을 음식점거리로만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 개발제한구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된 상태이며, 공공공간은 거의 없고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한 편으로, 마을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 반면, 우이령마을 남측 인근으로 북한산우이역이 개통하고, 리조트·캠핑장·암벽장 등이 개장하여, 마을 일대의 방문객·이용객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공원 대상지는, 국립공원 흙길과 마을 도로(삼양로 181길) 사이에 위치한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수목과 공터가 어우러진 가운데, 주차장·족구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3) 마을을 지나 전경대 입구에 이르러서야 양 도로 합류

③ 대상지 내부 이용현황 - 족구장, 주차장



④ 대상지 내부 이용현황 - 공터



⑧ 동측 연접부 도로(삼양로 181길)



“계 획”

-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살펴보면, 마을 도로와 국립공원 hiking을 연결 하는 공간으로, 공연장과 운동장, 휴게공간, 편익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계획안



- 총사업비는 118억 원이고 전액 구비로 집행될 계획임(총사업기간 ‘20.11.~’23.12.).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11,800	100	10,100	1,600	
설계비	200	100	100	-	용역비
보상비	10,000	-	10,000	-	
공사비	1,600	-	-	1,600	조성비

- 참고로, 대상지는 1인이 소유하는 사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는 공원 지정의 필요성 및 문화공원 조성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임.

“공원 결정의 타당성 및 기타 과제”

- 이 의견청취안은, 주변 여건 변화를 계기로 우이령마을을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마을을 지나는 양 도로의 교차 통행이 어렵고 마을의 공공공간·편익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 도로를 연결하는 공원 조성은 마을 접근 및 통행 편리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 및 다양한 여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상지는 국립공원에 연접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므로 생태적 환경자원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공원시설이 신중히 계획될 필요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공원 조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임.
- 또한, 공원 조성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별 건축행위를 통한 마을환경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특히, 우이령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나 국립공원 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일정 수준의 건축행위가 허용되었으나(검토보고서 붙임 3), '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밀집마을지구에서도 해제됨으로써 현재는 건축행위에 보다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낙후된 마을의 쇠퇴를 보다 가속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우이령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일정 수준 건축행위를 통해 마을의 종합적 정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우이령마을은 현재 마을 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나, 집단취락지구 지정요건을 토대로 우이령마을 내 취락밀집지역 중심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검토보고서 붙임4)⁴⁾.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토론요지 : 없음

4) 우이령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요건 '주택호수' 및 '호수밀도' 중에서, 주택호수 기준은 충족한 반면(10호 이상) 호수밀도 기준은(10호 이상/1만㎡) 미충족. 그러나, 우이령마을 내 취락밀집지역 중심으로 호수밀도 산출 시 호수밀도 충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VII. 심사결과 : 원안 동의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의견 제시

- 이 의견청취안의 문화공원 결정의 궁극적 목적인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개별 건축행위 활성화도 필요하므로,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VI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09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우이령 공원	문화공원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	증)6,180	6,180	-	

3. 입안사유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흙길)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삼양로181길)을 연결하는 순환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주변 리조트, 가족캠핑장, 인공 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5. 주민 의견청취

- 열람기간 : 2021. 4. 29. ~ 2021. 5. 13.(14일간)
- 열람공고게재 : 서울시보, 및 일간신문(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구분	주 민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토지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랜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곳으로 이미 공원에서 지정된 곳도 해제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하여 취득할 계획임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공원은 성격상 지역의 대표적 인물, 지역 축제,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조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문화공원 특성에 맞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이동 역사·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는 곳은 개인토지 위주의 비정형적인 상황으로 문화공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공원 결정에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서울연구원)을 통하여 접근성, 이용 편의성,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설정 	

6. 관련부서 협의의견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재원 조달계획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국립공원과 연결한 위치로서 공원이 기설정된 지역에 도시 계획시설(문화공원)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흙길)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연결하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휴식공간 제공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남측에 설치된 캠핑장(문화공원)이 접해 있는 바, 중복된 문화공원의 조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남측 '우이동 가족캠핑장(문화공원)'은 캠핑객으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신규 공원(문화공원) 지정 추진 	반영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 도시계획 시설(공원)은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2〉 제1호라목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국토부(녹색도시과) 사전협의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협의 후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국토부(녹색도시과)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 득함 (21.09.06.) 	반영
서울시 공원조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는 區관리 공원이며, 市는 신규 공원 결정을 위한 지원은 어려우므로 국비 분담 비율에 맞춰 자치구 자체 재원 마련 계획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16조 및 제16조 의2에 따라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화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市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市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공원조성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계획 	반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시 시설계획과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설치목적 및 필요성 등 제시 바람	• 2020년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서울연구원)결과 및 수유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낙후되어 가는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반영
	• 개발제한구역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선행 필요	•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市공원녹지정책과)와 사전협의완료 • 市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국토부(녹색도시과)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사전협의를 득함 ('21.09.06.)	반영
	• 공원형상 및 경계의 적정성 여부를 제시 바람	• 서측(230번지)은 국립공원 경계로 설정하고, 동측(224-14번지)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계에 따라 설정 • 북측(231, 232번지)은 지적경계로 설정하고 남측(226번지)은 지장물(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반영
	•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 ('22년도 구비 예산 : 101억원 확보)	반영
	• 본 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임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음 ('21.09.10.)	반영

7. 강북구의회 의견청취

- 일 시 : 2021. 6. 10.
- 결 과 : 원안 가결

8.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일 시 : 2021. 7. 19.
- 결 과 : 조건부 동의

구분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1	• 대상지 선정에 대한 당위성과 공원 조성의 적합성 제시	• 2020년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서울연구원)결과 및 수유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연결하고 주변 리조트,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휴식공간 제공	반영

구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2	• 기존의 지형 및 자연생태계를 순응하여 계획적 개발 및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지형과 기존 양호한 수목 활용 예정	반영
3	• 다양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한 특색 있는 문화공원 조성 필요	• 숲속문화마을(舊우이동먹거리마을)의 과거 유원지 기능 및 대학 MT촌 역할과 현재 인접한 가족캠핑장과 리조트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공원을 조성	반영
	• 다양한 조성 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공원 접근성 향상에 대한 고민 필요 • 공원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조성 계획을 세울 것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완료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후 반영

9. 국토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 일 시 : 2021. 9. 6.
- 결 과 : 조건부 추진

구분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1	• 시설입지 선정의 타당성 보완 필요	• 2020년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서울연구원)결과 및 수유지역생활권계획에 반영된 사업임 •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흙길)과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을 연결하고 주변 리조트, 가족캠핑장, 인공암벽장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휴식공간 제공	반영
2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는 공원임을 감안, 인공적 시설 설치 및 형질변경을 과도하지 않게 계획할 것 • 무장애 시설 기준 등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화장실 등 시설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기존 지형, 경관 등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인공적 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예정임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완료 후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추후 반영

10. 환경성·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 기존 지형, 경관 등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성 검토
 - 경전철 우이신설선(북한산우이역) 개통 및 버스정류장(버스종점)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대상지 내 최소한으로 주차장시설 7면 확보(장애인1면포함)

11. 기타

○ 재원조달계획

- 총 소요예산 : 11,8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1,800	100	10,100	1,600
구 비	11,800	100	10,100	1,600

○ 추진경위

- '18.12~'20.07 : 우이령마을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 (강북구)
- '20.12.30. :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추진계획 수립
- '21.04.29. ~ 05.13. :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21.06.10. : 강북구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 '21.07.19. :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조건부동의)
- '21.09.06.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사전협의 (조건부추진)
- '21.09.10. :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 '21.11.03. :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분석 (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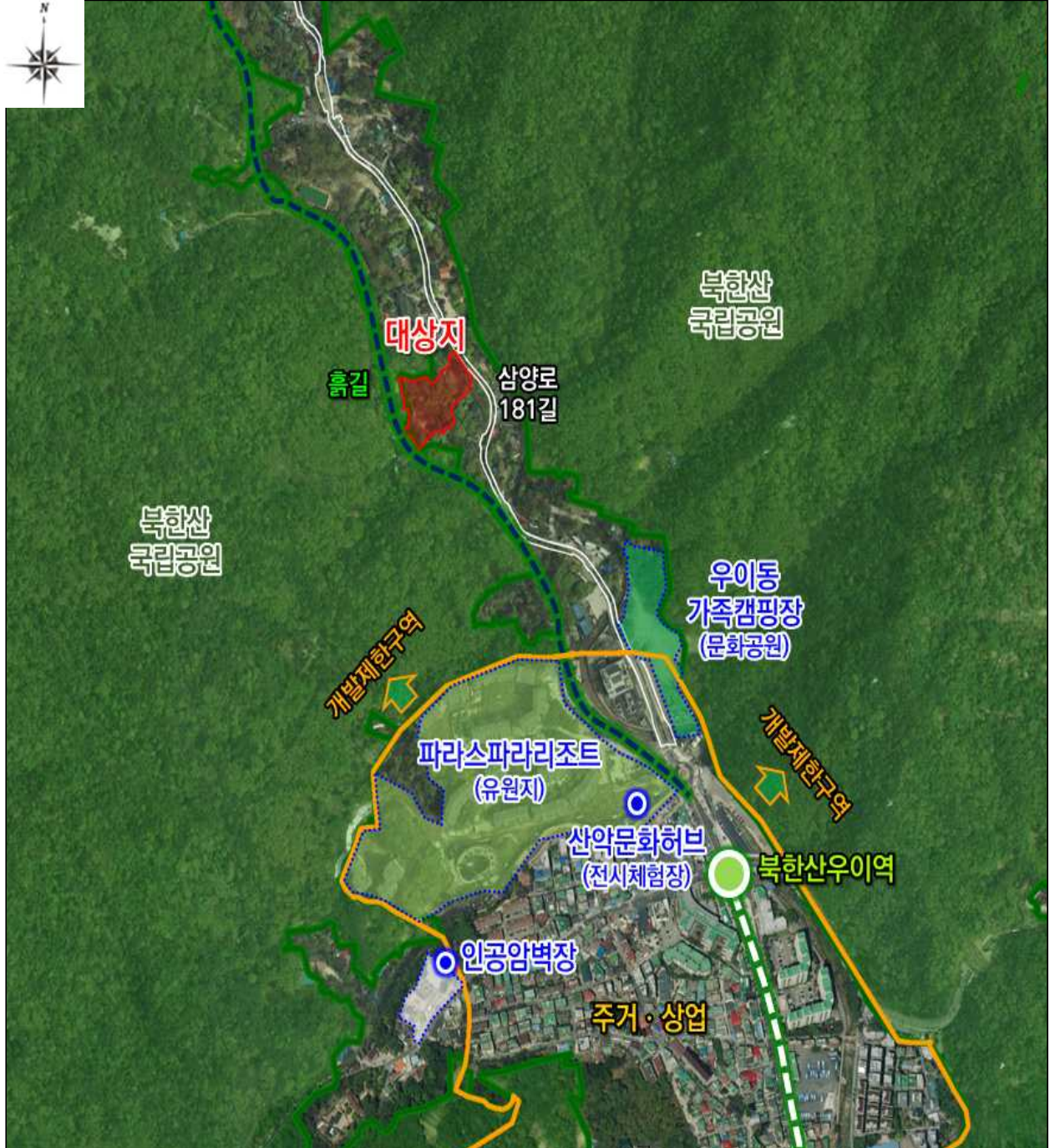
붙 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안)(기정, 변경) 1부. 끝.

※ 작성자 : 시설계획과 공간시설계획팀 유승아(☎2133-8459)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 현황사진

KEY MAP

① 북한산국립공원 내 흙길 조성(예정)지

② 대상지 서측 국립공원 연결통로

③ 내부 이용현황 - 족구장, 주차장

④ 내부 이용현황 - 공터

⑤ 내부 주차장 연결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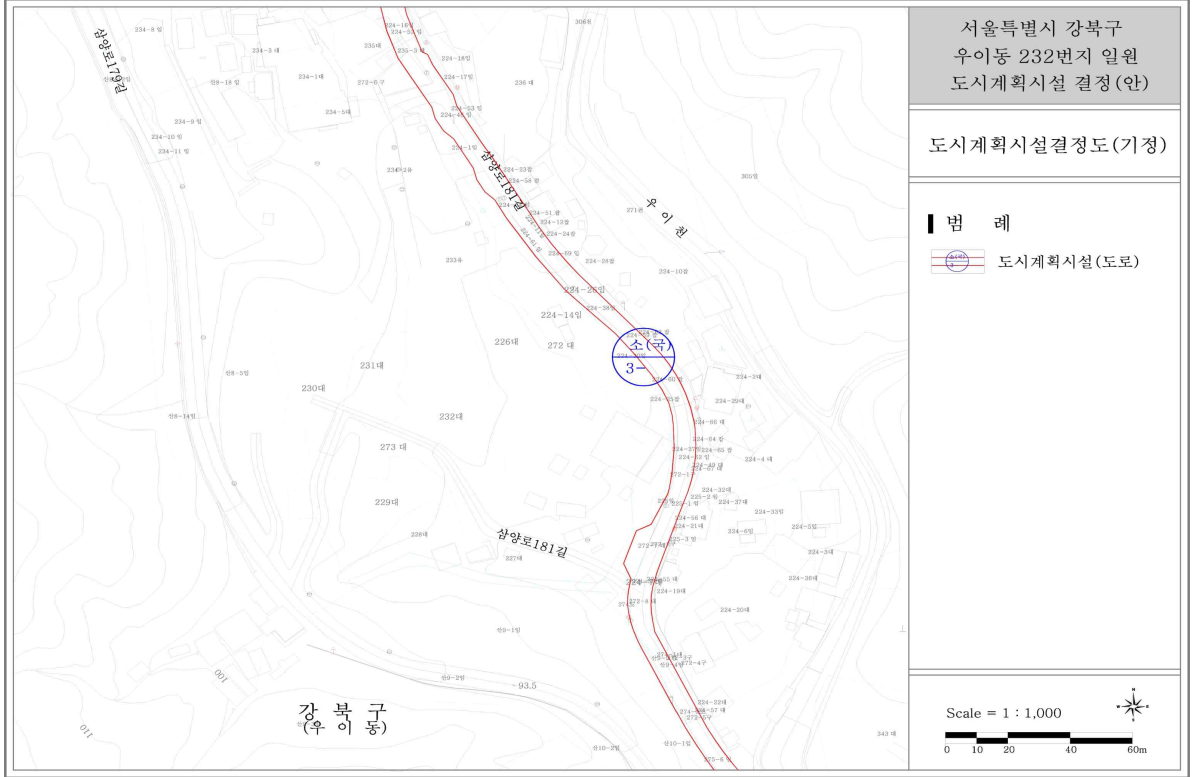
⑥ 삼양로변 진입되는 차량 통로

⑦ 내부 임야 현황 - 주차장 활용중

⑧ 동측 연접부 도로(삼양로 181길)

붙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안)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도(변경)

